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현행 분쟁조정 절차에 예금 관련 분쟁을 포함하고 행정안전부에 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요청 근거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39·19350호)됨에 따라,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 예금 관련 분쟁도 포함하고, 우체국예금·보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 정의함.(안 제5조 및 안 제5조의2, 제5조의3)
- 나.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시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호의2)
- 다. 한국은행법 인용 법조문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 반영함.(안 제

11조제1항제6호)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2조 제1호 및 제2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48조의 2”를 “법 제51조”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분쟁의 정의) 법 제51조제1항에서 “예금계약, 예금지급, 보험모집,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등 우체국예금·보험 관련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우정사업본부장이 예금·보험계약의 해지 및 예금·보험금 지급 등 예금·보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예금·보험계약자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예금·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이 재심사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항
2.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금·보험약관의 내용 및 해석 등과 관련하여 예금·보험계약자등이 제기한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

한 사항

3. 그 밖에 우체국예금·보험과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기된 민원 중 우정사업본부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3(중전의 제5조의2) 중 “간사를”을 “예금 분야와 보험 분야의 간사를 각각”으로, “보험”을 “예금·보험”으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48조의5”를 “법 제54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1조”를 “법 제56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한국은행법」 제28조제13호”를 “「한국은행법」 제28조제1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법 제48조의2”를 “법 제51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1조”를 “법 제56조”로 한다.

1의2. 법 제3조의3에 따른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의 고시

4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원권리자·거래 상대방의 고유식별정보
2. 법 제2장에 따른 예금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예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예금계약자의 고유식별정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4호의2,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9호 중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제51조에 따라 설치된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48조의2에 따른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④ (생략) <u><신설></u>	제5조(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51조--- ---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분쟁의 정의) 법 제51조 제1항에서 “예금계약, 예금지급, 보험모집,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등 우체국예금·보험 관련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u>우정사업본부장이 예금·보험 계약의 해지 및 예금·보험금지급 등 예금·보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u>

	<u>법률」에 따라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예금·보험계약자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예금·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이 재심사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항</u>
	<u>2.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금·보험약관의 내용 및 해석 등과 관련하여 예금·보험계약자등이 제기한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한 사항</u>
	<u>3. 그 밖에 우체국예금·보험과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기된 민원 중 우정사업본부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u>
<u>제5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u>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및 회의의 기록 등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u>간사를 두며</u> , 간사는 <u>보험</u> 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u>제5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u> ----- ----- ----- <u>예금 분야와 보험 분야의 간사를 각각</u> ----- --- <u>예금·보험</u> ----- ----- -----

제8조(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위
원장은 법 제48조의5에 따른 분
쟁조정 결과 또는 분쟁조정 회
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
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생략)

<신설>

2. ~ 4. (생략)

<신설>

5. (생략)

6.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예금
의 종류별 이자율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한국은행
법」 제28조제13호에 따라 금
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의 범위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
---- 법 제54조-----

-----.

제11조(권한의 위임) ① -----
----- 법 제56조----

-----.

1. (현행과 같음)

1의2. 법 제3조의3에 따른 우체
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의 고시

2. ~ 4. (현행과 같음)

4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주
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5. (현행과 같음)

6. -----

----- 「한국은행
법」 제28조제15호-----

7. ~ 15. (현행과 같음)

16. 법 제51조-----

②

법 제56조

[illegible]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총괄과	
연 락 처	(044) 200 - 8423